

여경협 강원지회장에 정경인씨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활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를 이끌어갈 제7대 회장에 정경인(춘천·주식회사 파이프퀸 대표이사) 현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강원지회는 18일 춘천시 후평동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차기 지회장을 비롯해 8명의 임원을 뽑았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해 49명(1명 위임)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43표, 반대 3표로 3년 임기의 지회장에 당선됐다. 대의원(임원)은

노현숙(춘천·주식회사 인터포스·그림톡컴퍼니) 박미자(춘천·천리안공인증개사) 서효승(철원·주식회사 미래건설) 신지용(홍천·주식회사 한옥과문화) 육혜진(춘천·디자인휴) 이미옥(양양·주식회사 해송KNS) 조영숙(강릉·주식회사 일광) 홍경숙(춘천·지혜안전 주식회사)가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정경인 차기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6대 회장으로 강원지회를 이끌어온 신두옥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김보경기자

“여성경제인이 신나게 사업할 여건 조성”

정경인 차기 지회장



“여성경제인들이 신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활력 넘치는 강원지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를 이끌어갈 정경인(59·사진) 차기 지회장은 “여성경제인으로 어려움도 경험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며 “그동안 받은 성과를 하나로 모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 차기 지회장은 “무엇보다 공약으로 내건 기업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신보, KOTRA 등 4대 기관의 특별자문을 위촉해 회원사들의 경영자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지회가 공신력 있는 조직

이 되도록 대기업, 언론사, 정부기관 등과 만나고 연대해 회원사들의 네트워크를 단단히 하겠다”며 “소속감과 만족감을 얻도록 역동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원주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시, 올 아파트 건설사 4곳과 양해각서

원주시가 지역 내 아파트건설을 포함한 각종 개발수요와 맞물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원주시는 18일 오전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단구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와 기업도시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 등 건설시행사 2곳과 시공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는 총 공사비 1017억원 가운데 31.2%인 317억원을,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는 총 공사비 1682억원 중 30.86%인 519억원을 지역 건설업체에 배정

하는 등 이들 아파트 공사로 지역 업체에 총 836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 상반기 혁신도시 모아엘가 아파트, 봉화산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와 양해각서를 체결, 총 514억원을 지역업체에 맡기기로 하는 등 올해만 4곳의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모두 135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 시는 이같은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를 내년부터 보다 확대할 예정이어서 지역 건설업계 및 상경기 특수에 거는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건축공사 지역업체



원주시 공동주택 건설 지역업체 참여 양해각서 체결식이 18일 오전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창목 시장과 한신 휴플러스 및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 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여제'를 내년부터 10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착공 신고 전 대상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잇단 개발수

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지의 대형 업체에 밀려 지역 업체 참여가 저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정태욱 tae92@kado.net

여경협 강원지회장에 정경인 대표

〈춘천 파이프 퀸〉

신임 대의원 8명 선출

정경인(59) 춘천 파이프 퀸 대표가 제7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지회장 신두옥)는 18일 오전 도지회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제7대 지회장 및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강원지회장 선거에는 총 49명이 투표에 참가, 단독 입후보한 정경인 후보가 찬성 43표를 얻어 신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에 선출됐다.

강원지회장을 제외한 총 12명을 뽑는

대의원 선거에서는 노현숙 춘천 인터포스 대표, 박미자 춘천 천리안공인중개사 대표, 서효승 철원 미래건설대표, 신지용 흥천 한옥과문화 대표, 육혜진 춘천 디자인후 대표, 이미옥 양양 해송KNS대표, 조영숙 강릉 일광 대표, 홍경숙 춘천 지혜안전 대표 등 8명이 신임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제7대 강원지회장과 대의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임기는 3년이다.

신두옥 여경협 강원지회장은 "제7대 지회장과 대의원들이 새롭게 뿔뿔하며 "이분들이 도내 여성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회원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안은복

• 새의까 •

정 경 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강원지회 위상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인 신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은 "강원도를 포함한 모든 경제단체에 특별자문위원을 위촉, 실효성 있는 경영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회장은 "강원지회가 공신력 있는 조직이 되도록 대기업과 정부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강원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른 공동도급, 분할발주, 수주 대책 지원 등 새로운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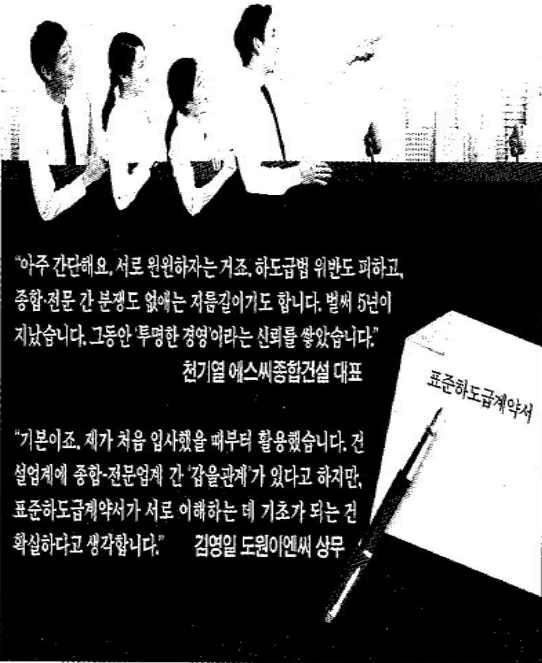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지회장은 숭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서울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인기배우 정보석씨의 친 누나인 정 지회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춘천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수석 부회장, 서울대 경영대학원 총동창회 이사, 강원도일자리창출 심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안은복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동반성장’ 기틀 다지다



“아주 간단해요, 서로 윈윈하자는 거죠. 하도급법 위반도 피하고, 종합-전문 간 분쟁도 없애는 저를 믿어주세요.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투명한 경영이라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천기열 에스씨종합건설 대표

“기본이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활용했습니다. 건설업계에 종합-전문업체 간 갑을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서로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도원이앤씨 상무

공정위 “건설업계 98% 활용”... 제조업 70%대와 비교 부당특약 무효 조항 등 투명 계약 디딤돌 역할 ‘톡톡’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건설업계에 정착하고 있다.

공정위 자체 조사에서도 건설업계의 98%가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동반성장 정책의 기틀이 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협력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백에 달하는 ‘부당특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어긋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객관적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협력사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규정을 정비,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계약 투명화로 신뢰를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한 목소리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1일 건설업 원사업자 200곳, 협력사 1만5000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원사업자의 98.3%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협력사 98%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

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제조업은 원사업자 75.6%, 수급사업자 70.4%만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정위에서 자꾸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다 보니 도입을 했다”면서 “그렇게 적용해 보니 현재는 협력사와의 불화도 줄고, 한층 성숙해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뿐 아니라 ‘공정위 4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전문건설사 입찰에서는 불합리한 특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도급 공사 입찰이나 계약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등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이를 회피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끊지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는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6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7조), 손익 분배는 출자비율에 따른다(제10조).

출자비율은 ①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②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 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지만,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제9조).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경비 등은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부담하고, 부담금을 3회(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상 미납한 구성원은 나머지 구성원들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시킬 수 있다(제10조의2).

구성원은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제11조), 탈퇴도 제한된다. ①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②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위한 분담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구성원들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이때는 반드시 탈퇴시켜야 한다)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제12조).

하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13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주력서 장훈기 경희대 연구교수

장훈기 현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연구교수는 우리나라 공공조달과 정부계약 제도의 대부로 통한다. 지난 1977년 경제기획원을 시작으로 2008년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장으로 퇴임하기까지 공직생활 31년의 절반가량을 이 분야에서 일했다. 국가계약법이 제정될 때 실무작업을 지원했고, 우리나라 공공입찰 방법 가운데 하나인 적격심사 제도도 그의 작품이다. 지난 1998년 발간한 <정부계약제도 해설>은 아직도 이 분야 바이블로 통한다. 장 교수는 이에 머물지 않고 그동안의 제도 변화를 집대성한 <공공계약제도 해설>을 최근 발간했다. 우리나라 계약 제도와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고견을 들어봤다.



적격심사制 만든 정부계약제도의 代父 “중심제 안착 ‘적정공사비’ 확보에 달려”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조달 분야 업무만 15년 이상 담당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7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예산회계법에 포함됐던 계약편을 1995년 분리해 현행 국가계약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국가계약법이 사실상 공공계약에 관한 기본 법으로 자리매김했다.

두 번째는 1995년 7월에 최저가 낙찰제를 대체해 공사수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 것이다. 변별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으나 낙찰률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투명성이 높고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 번째는 2007년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 협상 때 정부조달 분야 분과장을 맡아 양국 간 상호 시공실적 인정을 이끌어 낸 일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건설사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시 실적으로 인한 진입 장벽을 해소하게 됐다.

최근 종합심사 낙찰제 TF에 참여했다.

정부공사 계약에서 낙찰 제도는 핵심이다. 우리나라 낙찰 제도는 가격중심제도와 가격과 가격의 요소를 함께 평가하는 최고가저중심 낙찰 제도가 혼란하거나 병존해 왔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는 WTO 정부조달 개정협정이나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에서 보듯이 가격보다는 가격 외 요소를 포함한 최고가제 비중을 둔다.

우리도 이에 맞춰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대체하고자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원본적인 말이지만, 중심제의 안착은 결국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수주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특히 적정 공사비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표준품셈이 상당 부분 종전의 실적 공

사비인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낙찰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낙찰률이 70%대이던 적정하고 80%대이던 너무 높아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는 시각을 지양할 때가 됐다. 예정가격이 적절하게 작성됐고, 담합이 아닌 정상적인 경쟁을 통한 낙찰률이라면 이를 수용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공기연장 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국가계약법령에는 시공 도중 시공업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이로 인해 추가 발생한 비용을 실비로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많은 발주기관이 기재부와 사전 협의 해야 하는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제대로 조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물가 등락을 반영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발주기관이 정상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가계약법령에서 보장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분쟁을 미리 차단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공정 특약이나 불공정 거래는 어느 한쪽이 부담하게 손해를 보고, 다른 한쪽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부당 특약을 맺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부당 특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제도나 법 규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발주기관의 의지와 감독관

공직생활 30년 중 절반 정부조달 분야 업무 맡아 국가계약법 밑그림 그렸

“工期연장 추가비용 갈등, 총사업비관리지침 근거에 계약금액 변경·조정 장치 확실하게 해야 분쟁 차단”

‘정부계약제도 해설’ 이후 17년만에 새 길라잡이 ‘공공계약제도 해설’ 펴내 업계에 도움된다면 보람

청의 실효성 있는 점검, 확실한 예산지원 체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공사용자 직접구매제도도 논쟁거리다.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그런데 건설공사는 투입자재를 포함해 시공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자체 구매도 원자재 파동 등으로 시공사가 직접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공사에 맡기는 것이 시장 기능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다.

일부 공공공사에서 공사용자 직접구매 제도로 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자재의 미숙한 설치로 시설물 하자 및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탄기 방식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면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탄기의 장점과 기능을 퇴색시키고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에도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도 공사 목적물의 효율적 시공과 품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대상 공사 축소, 탄기 방식 제외와 함께 자재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공사기간에 차질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시공사의 판단으로 해당 품목을 ‘사급’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경희대 공공조달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경희대 공공대학원은 지난 1999년부터 6개월 과정의 ‘공공조달제도 고급 전문가 연구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업체의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이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개설 초부터 강의의 열기를 받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1000여명 이상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 정부조달 분야 담당자들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1998년 <정부계약제도 해설> 이후 17년 만에 새 해설서를 발간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과 제도가 무수히 바뀌었지만, 이를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하지 못해 많은 분이 새로운 해설서 출간을 기대했고, 저도 사명으로 여겼다. 그러던 중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에 따른 ‘국가계약제도 전문가 포럼’에 참여하면서 용기를 냈다. 발주기관이나 건설사 계약업무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집필하게 됐다.

오래 전부터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이 추진됐고,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하는 등 정부조달 시정의 국제화, 개방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대내적으로 조달 절차의 공정화, 투명화 요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요구가 늘면서 정부조달 관련 법령과 체계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전면적으로 새

롭게 편찬했고, 공공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법령 및 제도 해설을 다뤘다.

어떤 내용을 담았나.

국가계약법령과 국가계약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이와 차별되는 부분을 별도로 모아 공공기관계약은 제2권 제24장에, 지방계약은 제3권에 정리했다. 이렇게 모두 아울러서 때문에 책 이름을 ‘공공계약제도 해설’이라고 불렀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심제를 포함한 낙찰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히 정리했다. 국가재정법, 국고관리법 등 재정분야 법령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판로지원법 등 건설 및 물품분야 법령 규정 중 공공계약과 연계된 내용을 모아 제4권에 정리했다.

최근 유권해석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 제도 설명 바로 뒤에 정리해 독자의 계약실무 수행에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독자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이번 줄서는 20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두 권으로, 활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기획재정부 근무 30여년 중 절반 정도를 정부조달제도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체득한 내용을 최대한 담으려고 했다.

후대용이리보다 공공계약제도에 관한 기본서 또는 백과사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이 줄서가 공공기관, 관련업체, 후학들의 정부계약 업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했으나 아무래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독자들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혹여 어떤 좋은 의견이나 충고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글=김정석기자 jskim@ 사진=안윤수기자 ays77@